

의안번호	2221118
의 퇴 인	김선교 의원
회 답 일	2026. 9. 10.
추 계 번호	26B455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8조제5항 (금지행위 등)	관리청은 출입통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13조제1항 (과태료)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상향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8조제5항 (금지행위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13조제1항 (과태료)	○ (미대상)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1)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할 수 있도록 하고²⁾,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³⁾

□ 개정안은 관리청이 항만구역 내 출입을 통제하는 장소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출입통제 지역을 무단 출입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하는 것임

□ (안 제28조제5항) 개정안 시행으로 관리청이 출입통제 장소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 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규격 및 설치 범위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제113조(과태료)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위진수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위진수	02-6788-4650	wjinsu@nabo.go.kr